

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8. 6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04. 6.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·면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 운영에 앞서 주민지원과 한시기구 시한 연장을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읍·면 기능전환 한시기구(주민지원과)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함.(안 부칙, 한시적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)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
 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
  - 경남도 행정과-5887(2004.6.29)호의 「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한시기구 처리지침」

## 4. 본 문

- 덧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고성군조례 제1703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“현장  
민원해결과”를“주민지원과”로 하고, “2002년 12월 31일”을 “2005년 6월 30일”  
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2001. 11. 10 조 1703&gt;</p> <p>①(시행일) (생략)</p> <p>②(한시적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) <u>현장민원해결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③(다른조례의 개정)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2001. 11. 10 조 1703&gt;</p> <p>①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한시적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) <u>주민지원과----- 2005년 6월 30일</u> -----</p> <p>③(다른조례의 개정) (현행과 같음)</p>